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 동 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강동길 의원입니다.

지난 2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18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행을 수립·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국가적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이 있어 그와 관련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 조직의 설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자원 통합시스템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